

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3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9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시행되어 종전 관 주도의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관리
· 운영이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기금
설치 및 운영조례는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함.

2. 주요골자

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.

3. 관계법령
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
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